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직업능력개발훈련자에 대한 산재적용 여부 질의】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받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는 매월 150,000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산재보험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교육훈련생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인지 여부

A 산재보험법제105조의3의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규정은 산업현장의 실습생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위험권내에서 현장실습과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생"이란 직업교육훈련촉진법령상의 직업교육훈련기관(동법시행령제19조 제2항 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 포함)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중인 직업교육훈련생(학생포함)중에서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인 현장실습산업체와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에 의해 동산업체의 현장에서 현장실습을 받는 기간 중인 훈련생을 말하므로 귀사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이라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밟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생 중에서 현장실습 기간 중인 훈련생에 한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음

Q 【신업기능요원의 근로자 여부 질의】
병역법 제2조 제13호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기간중에 사업장에게 월급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받고 근무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여부

A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를 말하며, 산업기능요원은 병역법 제2조 제13호에 의하여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 기간 중에 산업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됨

☞한국종합노무법인한솔사무소 (031-877-7582-3)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Q 【매수할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이 거부된 사유로 계약취소 가능한지 】
저는 甲소유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甲도 위 대출에 협력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의사표시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A 의사표시에 관하여 민법 제109조에 의하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또한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지급 전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대출 등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자금마련계획을 알려 잔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매수인이 계획하였던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매도인들에게 표시하였다거나 매수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던 잔금지급방법이나 계획이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단순히 잔금지급 전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매도인 甲에게 이를 알려 잔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고,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김제동 변호사(031-829-9311)

전·기·상·식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대표이사 **안병호**

Q 슈퍼마켓인데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력으로 나와 요금부담이 많습니다. 일반용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까?

A 주택용 전력은 주거용고객(아파트고객 포함)과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 등 주거용 목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와, 계약전력 3kw이하인 고객중 농사용전력, 농사용전등, 가로등, 임시전력을 제외한 고객은 전기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용전력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용전력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전기사용설비가 3kw를 초과할 경우(또는 고객이 희망할 경우) 5kw까지의 증설은 공사비 부담없이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이 정한 서식)제출로 일반용전력으로 계약종별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계단, 복도등, 소화전 등)로서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거를 위한 설비라 할지라도 4kw이상은 고객희망에 따라 주택용전력이나 일반용전력의 적용이 가능하다.

Q 전기요금 안내표를 보니 선택요금(Ⅰ), 선택요금(Ⅱ)라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A 고객의 전기사용 특성에 따라 요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월간 사용시간이 20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선택요금 Ⅰ〔기본요금(저), 전력량요금(고)〕을 , 2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요금 Ⅱ〔기본요금(고), 전력량요금(저)〕를 선택하는 것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고압이상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및 임시전력(을) 고객이며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번 선택한 요금은 1년이 지나야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031-541-911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을 촉발시킨 일련의 상황과 사건들

성매매 극복을 향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다시함께센타〕조진경 소장님의 글 발췌한 내용입니다.

윤방법 하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끊임없는 폭력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들의 희생과 죽음은 끊이지 않았으나 이들의 죽음은 드러나지 않았고 거론되지 않았으며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 1980년대 중반부터 성매매 여성들을 주된 대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1992년 주한 미군에 의한 기지촌 성매매여성 윤금이씨의 끔찍한 죽음은 성매매 문제와 주한미군의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게 했다. 1995년 성매매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강제 수용시켰던 시설에서 발생했던 화재사건을 통해 수십 명의 성매매여성들이 사망하였고,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윤방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일으켰다. 1990년대 중반부터 유입된 외국인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인권착취 문제가 1990년대 후반부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으며 더욱이 만연한 성매매 시장 안으로 나이 어린 소녀들의 대규모 유입과 일본의 원조교제형식의 청소년에 대한 성ㅇ매매는 더 이상 한국 사회가 성매매 문제를 간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렇듯 끊임없이 발생되는 성매매 여성들의 죽음과 더욱 다양해지고 만연해지는 성매매 산업의 피해, 그리고 지속적인 민간단체들의 문제제기와 활동 등에 의해 1990년대 후반부터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때 2001년 정부부처 중 한 곳으로 여성부(현재 여성가족부로 개편)의 신설은 성매매방지법 제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된 계기이다. 여성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중대한 폭력이라고 이 문제에 대책을 마련하였고, 그 와중에 발생한 200년, 2002년 군산에서 일어난 2차 화재사건은 성매매 문제에 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단체들과 진보적 전문가 그룹, 시민사회단체, 여성부, 법무부, 지자체, 국회의원들의 협력과 노력으로 2004년 3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타(031-542-3171)

의·학·상·식

포천병원 1내과 과장 **박선수**

의학상담 알콜과 간질환

알코올에 의한 간질환은 지방간(fatty liver), 간염(alcoholic hepatitis), 간경변(alcoholic cirrhosis)등 3개의 조직학적 병기로 나눈다.

① 지방간의 조직소견상 간세포내에 많은 지방의 축적을 특징으로 하는 간질환으로써 가역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후는 양호하여 알콜을 끊고 영양부족 등을 교정하면 ~6주 이내에 간세포내의 지방이 소실된다.

② 알콜성 간염은 비록 가역적이지만 지방간보다 임상양상이 심각하며 간경변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알콜성 간염환자의 7년간 생존율을 보면, 금주한 환자인 경우에는 80%의 생존율을 보인 반면 계속 술을 마신 환자인 경우에는 50%의 생존율을 나타내고 있다.

③ 알콜성 간염이 심해져서 간의 비가역적인 손상이 왔을때 이를 간경변이라고 하며, 간경 변환자에게는 합병증인 복수, 자발성 복막염, 간신증후군, 간성 뇌증, 간세포암, 정맥류의 출혈 등이 나타난다. 알콜성 간경변환자중 술을 끊은 경우에는 5년간 생존율이 50~75% 인데 비하여 계속 술을 마신 경우에는 40% 이하로 나타났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콜을 끊고 금주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금주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환자들이 자신의 음주사실을 부정하고 치료에 매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점이다. 음주에 대한 사회의 관용적 분위기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한 요인인데 금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의료진의 각별한 도움이 필요하다. 알콜성 간염의 치료에는 비타민(vitamin)제제를 포함한 충분한 영양섭취 등이 요구되며 각 합병증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이미 진행된 간경변의 치료법에는 알콜섭취 제한, 부족한 영양분 투여, 간경변증에 대한 내과적 대증요법 등이 있다. 결론적으로 알콜성 간질환에 의한 사회적 생산성 및 환자의 삶과 생명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해야하며 금주 또는 절주와 관련한 계몽이 필요하다.

☞포천병원(031-539-9114)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종**

Q 【사업장 이전을 위한 신설공장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방법】
개인사업자로 섬유 염색공장을 하던 중 사업확장을 위하여 넓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새로 공장신축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지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세금도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 또한 당해 사업장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이 2이상이 있는 경우와,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는 기본원칙과는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즉, 본점과 지점의 2개중 지점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의 매입세액 공제 사업장은 이전할 지점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본점에서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의 업종과 전혀 새로운 업종의 사업장을 신설함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신설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신설사업장에서만 가능하고 기존사업장에서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전혀 다른 업종의 신설사업장에서 지출한 비용은 기존사업장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기존사업장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이전목적의 공장 신축의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업의 영속성을 인정하여 기존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로운 사업자등록은 할 필요가 없으며, 신설사업장이 완공되면 공장이전을 하고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장 이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사 박 운 종 031-872-6116

언제나 함께하는 아남 http://www.anamflower.co.kr 플라워

전국 꽃 배달 서비스

■대표 장춘화 ■031) 847-2298 ■의정부시 금오동 374-1번지 아남주상복합상가 119호